

제21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의회 정례회  
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1년 12월 31일

여 수 시 장 권 오 봉 인



여수시 조례 제1715호

붙임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.

##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전단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4조·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53조, 제54조, 제56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조의 제목 “(개최)”를 “(정례회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제44조”를 “제53조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법 제47조에 따른 정례회”를 “정례회”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과 법 제45조에 따른”을 “정례회 집회일과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법 제134조”를 “법 제150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 제41조제1항”을 “법 제49조”로, “법제127조”를 “법 제142조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4조·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여수시의 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53조, 제54조, 제56조에 따라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개최) 여수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4조에 따른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.</p>	<p>제2조(정례회) ----- ----- ----- ----- 제53조----- -----.</p>
<p>제3조(회의일수) 법 제47조에 따른 정례회 및 임시회는 연간 총 120일 이내로 한다.</p>	<p>제3조(회의일수) 정례회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4조(집회)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과 법 제45조에 따른 임시회의 소집은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 한다.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1. ~ 4. (생략)</p>	<p>제4조(집회) 정례회 집회일과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.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심의) ① 제1차 정례회에서</p>	<p>제5조(심의) ① -----</p>

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

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

-- 법 제150조-----

-----

-----

-.

② ----- 법 제49조-----

----- 법 제142조-----

-----

-----.